

# 공급망 ESG 관리 정책

---

규정번호 : KDS-B-1600

## 1. 배경 및 목적

경동은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이 공급망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환경, 더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여정의 선두에서 친환경 산업 혁신을 주도하며, 인권경영의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동은 모든 이해관계자 및 협력사의 상호 존중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정책을 제정합니다. 본 정책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ILO 핵심협약(ILO Fundamental Convention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및 OECD 실사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등 주요 국제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현황 파악, 리스크 식별, 예방 및 시정조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피해구제 절차, 성과 모니터링 및 공시 등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경동은 본 정책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상생 협력 문화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 경동은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정한 거래 및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정기적인 실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개선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거래 제한 조치를 포함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운영합니다.

## 2. 적용 범위

본 정책은 경동 본사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 (해외법인 포함) 및 국내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활동과 공급망 운영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받을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협력사, 물류 파트너, 고객, 지역사회, 정부기관 관계자 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본 정책의 내용이 해당 국가의 법적 구속력 있는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우선 적용하되, 그 범위 내에서 본 정책이 지향하는 책임 있는 경영 원칙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

### 3. 거버넌스

경동은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공급망 전담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주관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공급망 ESG 관리 및 주요 개선 활동 전반을 관리 감독합니다.

### 4. 검토 주기

본 정책은 국내 법령, 국제 가이드라인, 이해관계자 의견 및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합니다. 또한 중대한 환경 변화나 법규 개정 등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체계와 관련 절차를 적시에 업데이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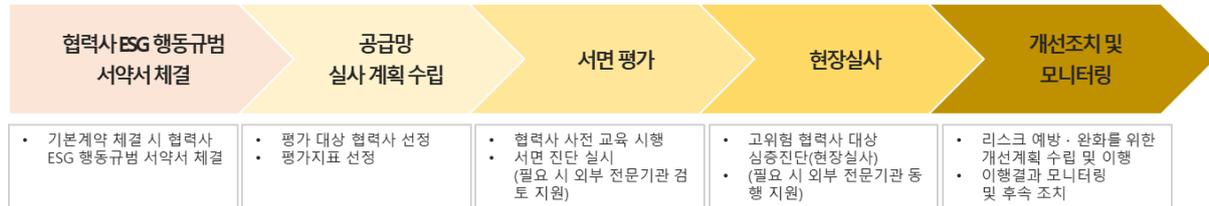
### 5. 공급망 ESG 관리 항목

경동은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ESG 리스크 진단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이는 국내외 규제 환경과 이해관계자 요구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보완합니다.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환경 인허가 및 보고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공정 전환 노력 등	인권 및 노동 안전 및 보건 정보보호 공급망 관리 등	윤리 및 준법경영 ESG 정보 공시 등

## 6. 공급망 ESG 실사 프로세스

경동은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 및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사를 수행합니다.



### 1) 협력사 행동규범 서약서 체결

- 경동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첫 거래 등록 시 또는 재계약 시점마다 「협력사 행동규범」을 확인하고 '협력사 행동규범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서약서는 인권·노동, 환경, 안전보건, 윤리·준법 등 핵심 ESG 원칙을 포함하며, 협력사는 해당 조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공급망 실사 계획 수립

- 경동은 연간 ESG 실사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대상 협력사는 전년도 거래 비중, 리스크 수준,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규모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공급망 실사를 수행합니다. 경동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평가 항목을 고도화하여, 공급망 전반의 ESG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 3) 서면평가

- 경동은 협력사의 ESG 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서면평가 및 문서 검토를 통해 협력사의 ESG 이행 현황을 점검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동은 협력사에게 평가 목적과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며, 요청 자료는 ESG 규정 준수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기술·가격 등 ESG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는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협력사 ESG 역량 향상을 위한 개선 안내 및 지원에 활용합니다.

### 4) 현장실사

- 경동은 사전 리스크 분석 및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협력사를 식별하고 필요 시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실사는 협력사의 규정 준수 여부와 현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절차로 수행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개선조치 및 모니터링

- 경동은 ESG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항목별 리스크를 식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사와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확인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예방·완화 조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도록 권고하며, 개선 진행 상황과 이행 결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 완료 시점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 7. 협력사 행동규범

경동은 협력사와의 건전하고 신뢰 기반의 관계 구축이 곧 기업 경쟁력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경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경동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망 관리 환경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윤리경영, 노동/인권 경영, 환경,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5 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경동과 협력사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 ESG 행동규범 바로가기 링크\]](#)

## 8. 이해관계자 소통과 투명성

경동은 공급망과 관련된 주요 ESG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는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적 요구와 국제 기준에 따라 공급망 ESG 실사체계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또한, 경동은 임직원, 협력사, 고객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공정·불합리·인권침해·부패·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제보된 사안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및 보복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합니다.

[\[사이버 신문고 바로가기 링크\]](#)

## 9. 지원 및 교육

경동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의 ESG 관리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ESG 교육, 우수사례 발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합니다.

## 10. 구매 의사결정과의 통합

경동은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ESG 기준을 구매 정책과 프로세스에 반영합니다.

신규 협력사 계약 시에는 품질, 재무, 운영 역량과 함께 노동·인권, 안전, 환경 등 ESG 요소를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거래 조건에 반영합니다. 본 기준은 기존 협력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1. 부칙

1) 제정일 : 2025.12.31